

기업메시징 요금 신고 근거 법률

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 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

13. "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가. 「저작권법」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
나.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

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4(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)

-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조제13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이 시장상황,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.
-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의 4(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 및 공개)

제30조의 4(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 및 공개) ① 법 제22조의4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신고를 하려는 자는 요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법 제22조의4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신고를 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전기통신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조 13호 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요금 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요금신고 대상 제외 사업자) 법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요금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직전연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이다.
제3조(재검토기한)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